상 · 벌점 규정

전부개정 2019. 12. 20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」 및 「생활관·면학실 운영 규정」에 따라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상·벌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운영) ① 상·벌점 적용과 조치, 해당 기록부 관리 업무는 학생안전부 소관으로 한다.
 - ② 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상·벌점 항목을 지적하고 격려하거나 상담·지도할 수 있고, 내용을 사감일지나 별도의 기록부에 기록한다. (일시, 장소, 내용, 상·벌점 여부, 점수 포함)
 - ③ 상점과 벌점의 부여 기준은 [붙임]과 같다.
- 제3조(상·벌점의 중복) ① 상·벌점 지적 시 분야를 별도로 하여 격려 혹은 지도하며, 동일 시간대에 둘 이상의 상·벌점 행위는 별도로 기록하고 점수를 부과한다.
 - ② 벌점일 경우 적발 지도 후 당일 반복될 때 지시사항 불이행(-3) 점수를 추가하여 부과한다.
- 제4조(상·벌점의 부여 및 집계 기준) ① 상·벌점 행위는 현장 인지가 아니라도 조사나 추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,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.
 - ② 집계 및 적용 기준은 1개월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, 누계 합산 및 조치 기간은 동 학기별로 하며, 해당 기간 상점 및 벌점의 개인별 집계 내용은 익월 초에 게시 공개한다.
- 제5조(상·벌점의 집행) ① 상점과 벌점을 합산하여 처리하며, 소정의 기간에 누계 합산된 상·벌점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 - 1. 모범학생 표창 해당기간 학급에서 벌점이 적거나, 상점이 많은 순서로 선발하여 표창한다.
 - 2. 불량학생 조치 벌점에 따라 익월 중에 다음 표에 의해 퇴사조치하고 가정에 통보한다.

기준기간	점 수	퇴사기간	기준기간	점 수	퇴사기간
	-20점	3 일	학기별	-30점	3 일
1개월	-25점	5 일		-40점	5 일
	-30점	7 일		-50점	7 일

(단, 1개월 기준으로 퇴사를 명령 받은 경우 해당 벌점은 삭감하고, 학기별 누계에는 산정하지 않는다.)

- ② 퇴사는 전일 학교일과 중 17:30 이후 귀가, 08:30 이전 등교(방과후학교 교육은 수강, 생활관 및 면학실 사용은 불가)하여 방과후 등교 시까지 가정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며, 귀가와 등교 시 반드시 사감당직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 (단, 기간 중 휴일과 방학기간은 제외한다.)
- ③ 고의로 퇴사를 유도한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퇴사처리가 어렵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(동절기, 통학기간 중, 방학 중, 2월 등) 퇴사에 해당하는 기간 환경 정화활동(07:30~08:30, 16:00~19:00) 등을 명하며 이는 방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퇴사에 따른 조치) ① 유기 퇴사가 1회 이상인 학생은 총학생회 이하 학생자 치기구의 간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② 유기 퇴사가 2회 이상인 학생은 교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 등 모든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은 「포상규정」에 따른다. (단, 퇴사조치에 해당되지 않아도 벌점이 조치기준에 자주 근접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)
- ③ 학교장은 학생의 반성 태도 및 기타 사정에 따라, 퇴사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고 기타 모든 조치 및 처리의 경중을 조절할 수 있다.

부칙 <제주과학고등학교-9521, 2019.1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[붙임] 상·벌점의 부여 기준

1. 상점 항목 (+)

분 야	항	내 용	상 점	비고
모범	1	수업태도 모범 (수업 준비, 교실 내 정 리정돈 등)	3	객관성 및 모범적 가치 고 려 부과
	2	생활실 및 면학실 청결 정리정돈 모범	3	방별/횡렬별 전원에게 부과
	3	봉사 수범(에너지 절약, 각종활동 수 범, 선도 / 선행 일체)	3	모범적 행동이 뚜렷하여 객관성이 있으며 타 학생
	4	생활태도 모범(벌점 항목의 상대적, 긍 정적 모범행위 일체, 취침시간·아침운 동 모범)	5	독인 등에 있으러 다 국 등 등에게 귀감이 된다고 판 단될 때 격려 및 부과

2. 벌점 항목 (-)

분 야	항	내 용	벌 점	비고
일과 전반	1	식사 무단 불참	3	
	2	지시사항 불이행	3	선배의 정당한 지시 포함
	3	생활태도 불량	3	예절불량, 실내소란, 보고의무 위반
	4	생활실 정리정돈 불량	3	침상은 개인별, 기타 전원
	5	휴게실 외 무단 식음료 취식	5	생활실에 음식물 보관 시 전원 벌점
	6	각종 시설(샤워실, 세면실, 화장실, 휴게실, 정보검 색실. 도서실. 면학실. 신발장. 학생회의실, 학생활동 실 등) 사용 불량, 과실 파손 등	5	도서 이용 북량 포함 해당자 전원에게 부과할 수 있음
	7	생활관 규정시간 외 무단 출입	5	08:10~17:30
	8	금지된 물품의 반입 및 사용	10	노트북 등 휴대·사용 포함
	9	중대한 불량행위(폭력/도박/음주/흡연, 불량 교제)	20	퇴사 조치함
조 조	10	조기운동 무단 불참	10	조기우동 종료 시점까지 사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
면 학 실	11	면학시간 중 생활실 취침, 샤워, 무단 기타 장소 사용	5	
	12	면학실 내 음식 음료 반입	5	
생활관	13	생활관 소란 행위	5	
	14	생활실 내 잡담 및 소란, 취침 방해	5	
	15	생활실 내 독서 혹은 공부	10	책, 책상, 전등 등 준비상태 포함
	16	취침시간 위반, 배회, 장소 이동, 기타 행위	10	노트북, 태블릿 등 휴대·사용 포함
	17	취침장소 무단 이동	10	방 혹은 잠자리 교환 포함